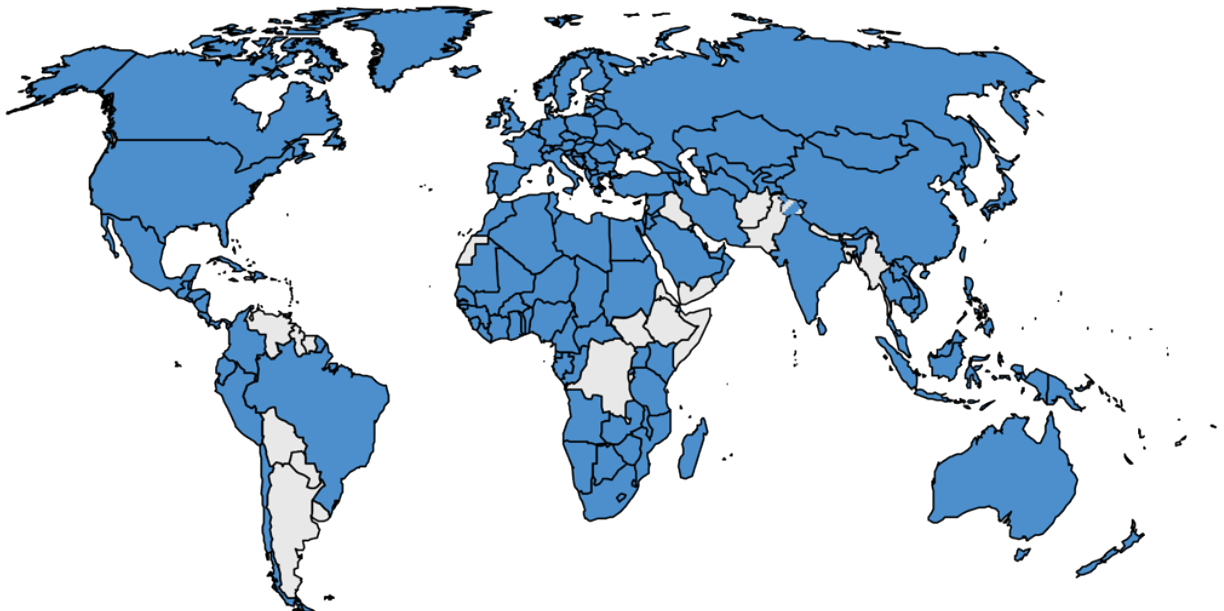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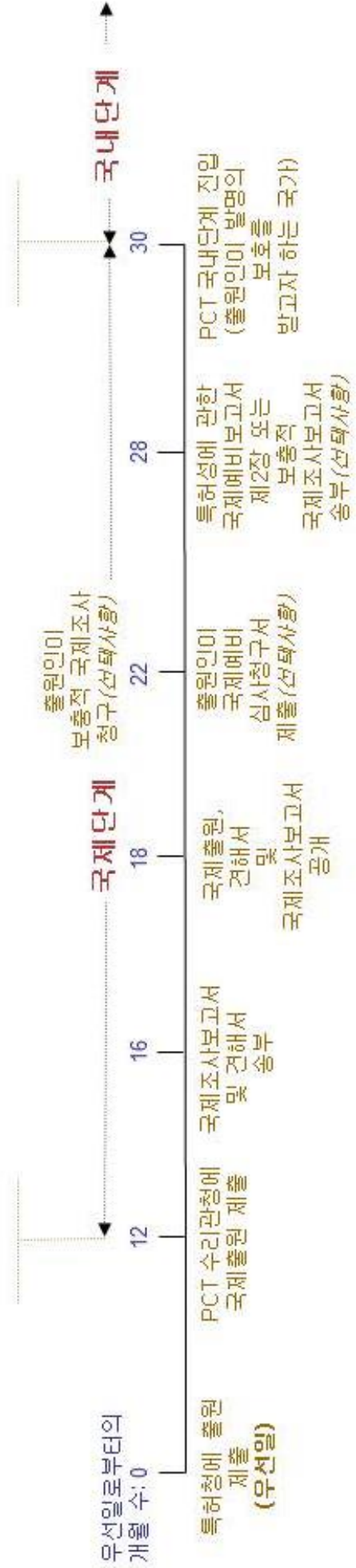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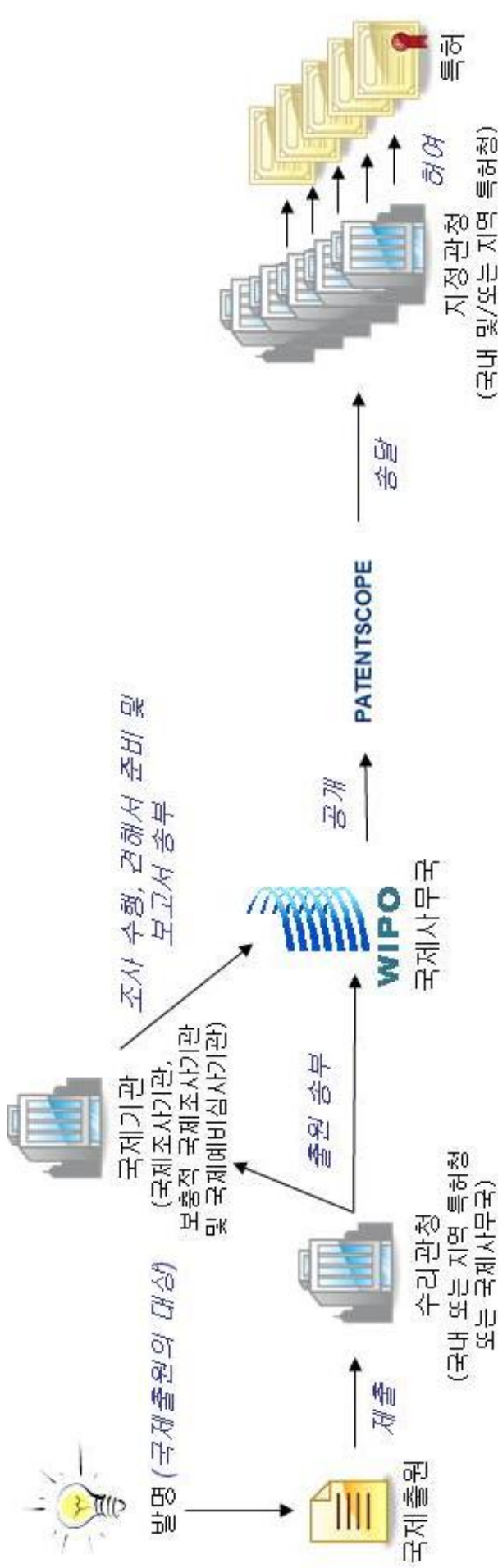
PCT 자주 묻는 질문

해외에서의 발명의 보호:
특허협력조약(PCT) 관련 자주 묻는 질문



2020년 4월

PCT 제도 개요



서문

특허협력조약(PCT) 관련 자주 묻는 질문은 PCT 절차의 개요를 출원인의 관점에서 설명해 줍니다. 구체적인 질문, 추가 정보 및 컨택포인트는 질문 29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1) 특허협력조약(PCT)이란 무엇인가요?

PCT는 150개 이상의 계약국들 간의 국제조약입니다.¹ PCT는 개별적으로 다수의 국내 또는 지역 특허출원을 하는 대신, 한번의 “국제”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수 많은 국가에서 동시에 발명에 대한 특허보호를 추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국내단계”에서 특허의 허여는 국내 또는 지역 특허청의 관할 하에 있습니다.

PCT 절차는 다음으로 구성됩니다.

출원: PCT 형식요건에 맞추어 한 언어로 된 국제출원을 국내 또는 지역 특허청 또는 WIPO에 제출하고 수수료를 지불합니다.

국제조사: “국제조사기관(ISA)”(세계 주요 특허청 중 하나)은 발명의 특허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개 특허문헌 및 기술문헌(“선행기술”)을 파악하여 발명의 잠재적 특허성에 관한 견해서를 작성합니다.

국제공개: 최선 출원일로부터 18개월의 만료 후 최대한 빠른 시일 내에 국제출원 내용이 세계에 공개됩니다.

보충적 국제조사(선택사항):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제2국제조사기관은, 각기 다른 언어 및 기술 분야의 선행기술의 다양성으로 인해 주 조사를 수행한 제1국제조사기관이 발견하지 못했을 가능성이 있는 공개문헌을 파악합니다.

국제예비심사(선택사항): 출원인의 청구에 의하여 국제조사기관 중 한 기관이 (일반적으로 출원인이 견해서의 내용을 고려하여 보정한 출원에 대하여) 추가 특허성 분석을 수행합니다.

국내단계: PCT 국제단계 절차의 종료 이후, 통상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출원의 최선 출원일로부터 30개월에, 출원인은 특허의 취득을 원하는 국가의 국내(또는 지역) 특허청에서 직접 특허 허여 절차를 개시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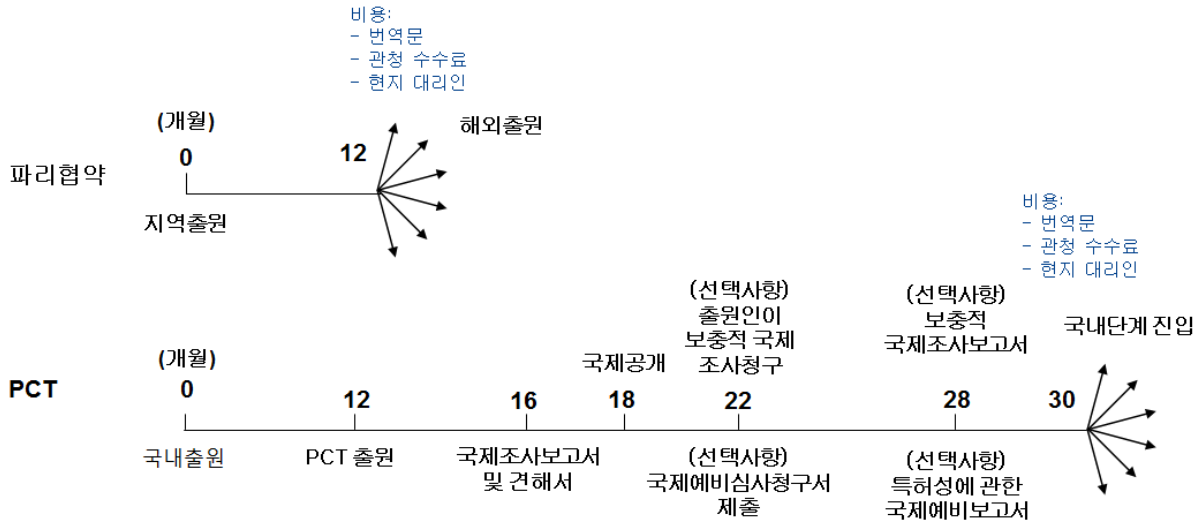
2) 어떻게 하면 발명을 여러 국가에서 보호할 수 있나요?

특허는 속지주의에 의해 제한됩니다. 여러 국가에서 발명을 보호하기 위한 몇 가지 옵션은 다음과 같습니다.

- (a) 직접 또는 파리협약 경로: 발명의 보호를 원하는 모든 국가들에 직접 동시에 개별 특허출원을 하거나(일부 국가에서 지역특허 절차 이용 가능), 파리협약국(산업재산권 보호를 위한 파리협약 회원국) 중 어느 한 국가에 특허출원을 한 후 그 최초 특허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에 다른 파리협약국들에 개별 특허출원을 함으로써 상기 모든 후출원 국가에서 최초 출원의 출원일을 주장할 수 있는 혜택을 누릴 수 있습니다(질문 11) 참조).
- (b) PCT 루트: 직접 또는 파리협약에 정해진 최초 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의 기간 이내에 PCT 출원을 할 수 있으며, PCT 출원은 모든 PCT 계약국에서 법적 효력이 있습니다.

¹ 상기 계약국 목록은 WIPO 웹사이트(www.wipo.int/pct/ko/pct_contracting_states.html)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파리협약과 PCT 경로의 비교



3) 특허협력조약은 누가 이용하나요?

국제적 특허보호를 추구하는 세계 주요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이 특허협력조약을 이용합니다. 또한, 중소기업(SME) 및 개인 발명자도 이를 이용합니다. *PCT 뉴스레터*(https://www.wipo.int/export/sites/www/pct/ko/newslett/2020/4_2020.pdf 참조)에 연간 PCT 최다 출원인 목록이 게재됩니다.

출원

4) 국제특허출원의 효과는 무엇인가요?

출원인의 국제특허출원이 국제출원일 획득을 위한 최소요건을 충족하는 한, 상기 국제특허출원은 일반적으로 모든 PCT 체약국에 대해 국내특허출원(및 특정 지역특허출원)과 동일한 효력을 가집니다. 나아가, 출원인이 모든 PCT 체약국에서 구속력이 있는 조약 및 규칙에 정해진 특정 형식요건을 충족하면, 다양한 국내(또는 지역) 형식요건에 대한 후속 적응조치(및 이와 관련된 비용)가 불필요해집니다.

5) PCT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는 권리는 누구에게 있나요?

PCT 체약국의 국민 또는 거주자는 국제특허출원을 할 자격이 있습니다. 국제출원에 기재된 출원인이 여러명인 경우, 이 중 한 출원인만 상기 요건을 충족하면 됩니다.

6) 국제특허출원은 어디서 할 수 있나요?

대개 국제특허출원은 국내 특허청에 하거나, 해당 국가의 국가안보조항이 허용하는 경우 WIPO에 직접 할 수 있으며, 상기 두 관청 모두 PCT “수리관청”의 역할을 합니다. ARIPO 하라레 협약(Harare Protocol), OAPI 방기 협정(Bangui Agreement), 유라시아특허협약(EAPC) 또는 유럽특허협약(EPC)의 회원국 국민 또는 거주자는 해당 국내법이 허용하는 경우 당해 지역 특허청에 국제특허출원을 할 수 있습니다.

7) 전자적으로 PCT 출원을 할 수 있나요?

대부분의 경우 출원인은 전자적으로 PCT 출원을 합니다. 출원인은 PCT 전자출원을 인정하는 관할 수리관청에 전자형식으로 PCT 출원을 제출할 수 있습니다. PCT 출원을 준비할 때 WIPO 웹서비스(ePCT-Filing) 또는 WIPO 제공 소프트웨어(PCT-SAFE)를 사용하면(국제사무국은 ePCT의 사용을 권장합니다), 입력한 자료를 자동적으로 인증하고, 부정확하거나 일관성이 없는 부분에 대해 주의를 받을 수 있으며, 해당 조치에 대한 기한의 감시 등 출원의 관리에도 도움이 됩니다. 또한, 전자출원을 하는 경우 출원인에게 특정 PCT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 PCT 전자출원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www.wipo.int/pct-safe/ko/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8) PCT 국제출원 및 처리 관련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국내단계 진입 비용은 어떻게 되나요?

국제출원 시 PCT 출원인은 통상적으로 3 종류의 수수료를 납부합니다.

- (a) 국제출원료 1,330 스위스프랑²
- (b) 선택된 국제조사기관에 따라 약 150~2,000 스위스프랑²에 달하는 조사료
- (c) 수리관청에 따라 다른 소액의 송달료

국제특허출원은 모든 PCT 계약국에서 효력이 있기 때문에 PCT 절차의 현 단계에서 출원인은 국내 및 지역 관청에 개별 출원을 할 시에 발생하는 비용을 지불하지 않습니다. PCT 수수료에 관한 추가 정보는 수리관청, 수수료 표(www.wipo.int/pct/en/fees.pdf), *PCT 출원인 가이드* 및 *PCT 뉴스레터*(질문 29) 참조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국내단계 진입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수료는 특허 허여 전 가장 중요한 비용을 의미합니다. 이러한 비용은 출원 번역료, 국내(또는 지역) 관청 출원료 및 현지 변리사 또는 변호사 선임료를 포함합니다. 그러나 여러 관청에서는 국제단계에서 이루어진 작업을 인정하여 국제특허출원에 대한 국내출원료가 국내 직접출원에 대한 국내출원료보다 낮습니다. 유념해야 할 것은 특허를 받은 경우 특허 취득 시 PCT를 사용했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출원인은 특허의 유지를 위해 특허를 받은 해당국에 유지료를 납부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9) PCT 국제출원제도에 수수료 감면 혜택이 있습니까?

전자출원한 모든 출원인은 제출유형과 제출된 출원의 형식에 따라 PCT 수수료 감면 혜택을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 7) 참조).

또한, 개발도상국의 출원인에 의한 PCT 제도의 이용을 장려하기 위해 독자적으로 출원하는 자연인에게에는 국제출원료 등 특정 수수료에 대해 90%의 수수료 감면 혜택이 주어집니다.³ 상기 90% 감면은 출원인이 자연인인지 여부에 상관없이, 국제연합의 분류기준에 따른 최빈개도국 국적의 해당국 거주자에게도 적용됩니다. 출원인이 여러명인 경우, 출원인 모두가 상기 기준을 충족해야 합니다.

출원인이 특정 국가(*PCT 출원인 가이드* 부속서류 D www.wipo.int/pct/en/appguide/index.jsp 참조)의 국민 또는 거주자인 경우, 일부 국제조사기관에서도 국제조사료를 감면해 줍니다.

² 2020년 4월 1일 적용금액

³ 국가 전체 목록(www.wipo.int/pct/en/fees/fee_reduction.pdf) 및 2017년도 PCT 총회의 해석(www.wipo.int/pct/ko/fees/2017_fee.html)을 참조하십시오.

일부 국내 또는 지역 관청은 자연인, 대학, 비영리 연구기관 및 중소기업(SME)들을 대상으로 국내단계 진입에 따라 납부해야 할 수수료에 대해 수수료 감면 혜택을 제공합니다(PCT 출원인 가이드 각 국내장(章) www.wipo.int/pct/en/appguide/index.jsp 참조).

10) PCT 절차는 얼마의 시간이 소요되나요?

대개 출원인은 개별 특허청과 국내단계 절차를 시작하고 국내단계 요건을 충족하기 전까지 국제특허출원한 날로부터 추가적으로 최대 18개월(또는 통상적으로 우선권주장의 기초가 되는 최초 특허출원의 출원일로부터 30개월 - 질문 11) 참조)의 시간이 있습니다(질문 26 참조).

이러한 추가시간은 특허취득 가능성을 평가하고, 특허보호를 취득하고자 하는 국가들에서 출원인의 발명을 상업적으로 이용하며, 발명의 기술적 가치 및 상기 국가에서 지속적인 보호의 필요성을 평가하는 데 유용하게 사용될 수 있습니다.

다만, 주목해야 할 점은 출원인이 국내단계에 진입하기 전 해당 특허출원의 최선 출원일("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만료할 때까지 기다릴 필요는 없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해, 출원인은 언제나 국내단계 조기진입을 신청할 수 있습니다.

국내단계에서 국내 또는 지역 특허법, 규칙 및 관행에 따라 출원을 심사할 책임은 각 특허청에 있으므로, 특허를 심사하고 허여하는 데 필요한 시간은 특허청마다 상이합니다.

11) 선특허출원에 대해 "우선권을 주장"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입니까?

일반적으로, 하나 이상의 국가에서 발명의 보호를 희망하는 특허출원인들은 먼저 국내 또는 지역 특허청에 국내 또는 지역 특허출원을 한 후 상기 최초출원의 출원일로부터 12개월 이내(과리협약에 정해진 기한, 질문 2) 참조)에 PCT 국제출원을 합니다.

선특허출원에 대한 우선권주장의 효과는 그 사이에 이루어진 행위(발명에 대한 다른 출원, 공개 또는 판매 등)를 이유로 특허를 무효화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12) 국제특허출원은 어느 언어로 할 수 있습니까?

국제특허출원은 수리관청이 인정하는 언어이면 그 중 어느 언어로든 제출할 수 있습니다. 당해 국제조사를 수행할 국제조사기관이 인정하지 않는 언어로 출원할 경우, 출원인은 국제조사를 위해 출원의 번역문을 제출해야 합니다. 단, 수리관청은 국제조사를 수행할 관할 국제조사기관(질문 13) 참조)이 인정하며, 국제특허출원이 공개되는 언어인 "공개언어"(아랍어, 중국어, 영어, 불어, 독어, 일어, 한국어, 포르투갈어, 러시아어, 스페인어) 중 최소 한 언어로 된 출원을 인정할 의무가 있습니다. 따라서, 출원인에게는 언제나 PCT 국제조사 또는 공개를 위한 번역문이 불필요한 최소 1개의 언어로 국제특허출원을 제출할 수 있는 선택권이 있습니다.

국제조사

13) 제 PCT 출원에 대한 국제조사는 어느 관청이 수행하게 됩니까?

PCT 체약국이 지정한 국제조사기관(ISA)은 다음과 같습니다: 호주, 오스트리아, 브라질, 캐나다, 중국, 칠레, 이집트, 핀란드, 인도, 이스라엘, 일본, 필리핀, 대한민국, 러시아 연방, 싱가포르, 스페인, 스웨덴, 터키, 우크라이나 및 미합중국의 국내관청, 그리고 유럽특허청(EPO)과 노르딕특허기구(NPI), 비세그라드 특허청(VPI) 등의 지역관청. 어느

국가의 국민 또는 거주자가 이용 가능한 특정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출원이 제출된 수리관청에 의해 결정됩니다. 일부 수리관청에서는 하나 이상의 관할 국제조사기관 중에서 어느 하나를 택할 수 있는 선택권을 제공하고 있습니다. 출원인의 수리관청이 이에 해당하는 경우, 언어, 수수료 등과 관련한 상이한 요건들을 고려하여 어느 한 국제조사기관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14) PCT 국제조사란 무엇입니까?

PCT 국제조사란 대다수의 특허출원이 제출된 언어들(중국어, 영어, 독일어, 일어 및 특정 경우, 불어, 한국어, 러시아어, 스페인어)로 쓰여진 관련 특허문헌 및 기타 기술문헌에 대한 양질의 조사를 말합니다. 양질의 조사는 문헌의 참조 범위에 대하여 특허협력조약에 명시된 기준, 그리고 경험있는 특허청인 국제조사기관에 소속된 자격을 갖춘 직원과 균일한 조사방법에 의해 보장됩니다. 조사결과는 국제조사보고서 및 발명의 잠재적 특허성에 관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에 공개됩니다(질문 15 및 18) 참조).

15) 국제조사보고서란 무엇입니까?

국제조사보고서는 주로 국제출원에 개시된 발명의 특허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공개된 특허문헌 및 기술분야 학술 논문의 인용목록으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보고서는 신규성 및 진보성(비자명성)에 대한 중요 특허성 문제와 관련하여, 나열된 각 문헌이 가질 수 있는 관련성을 나타냅니다. 국제조사기관은 조사보고서와 함께 특허성에 관한 견해서를 작성하며, 상기 견해서는 출원인에게 발명의 잠재적 특허성에 관한 자세한 분석을 제공해 줍니다(질문 18) 참조).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는 국제조사기관에 의해 출원인에게 송부됩니다.

16) 국제조사보고서는 어떤 가치가 있습니까?

국제조사보고서는 출원인이 PCT 체약국에서의 특허 취득 가능성을 평가할 수 있게 해줍니다. 유리한 국제조사보고서, 즉 인용문헌(선행기술)이 특허의 허여를 방해하지 않는 것으로 보이는 보고서는 출원인이 발명의 보호를 희망하는 국가들에서 출원 처리를 진행시키는 데 도움을 줍니다. 조사보고서가 불리한 경우(그 예로 발명의 신규성 및 진보성에 이의를 제기하는 문헌들이 인용된 경우), (상기 문헌들로부터 출원인의 발명을 더 잘 구별할 수 있도록) 출원인은 국제특허출원의 청구범위를 보정하고 공개하거나, 또는 공개 전에 출원을 취하할 수 있는 기회가 있습니다.

17) 모든 국제출원에 대해 국제조사가 수행되나요?

일반적으로 국제조사는 모든 국제출원에 대해 수행됩니다. 그러나 국제조사기관이 조사를 수행하지 못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그 예로, 해당 국제출원이 국제조사기관이 국제조사를 수행할 의무가 없는 대상에 해당되는 경우, 또는 명세서, 청구범위, 도면이 충분히 명료하지 않아 국제조사기관이 유의미한 조사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국제조사기관은 국제조사보고서 부작성 선언서를 발행하게 됩니다.

또한, 국제조사기관에서 부분적 조사보고서를 발행하는 사례도 있습니다. 이러한 상황은 국제조사기관이 보기에 국제출원이 다수의 발명을 포함하며, 출원인이 상기 추가발명(들)을 조사하는 데 필요한 추가조사료를 납부하지 않은 경우에 발생할 수 있습니다.

18)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란 무엇입니까?

국제조사기관은 모든 국제출원에 대하여 국제조사보고서를 작성함과 동시에, 발명이 조사보고서 결과에 비추어 특허성의 기준을 충족하는지 여부에 대한 예비적이고 구속력이 없는 견해서를 작성하게 됩니다. 견해서는 국제조사보고서와 함께 출원인에게 송부되며,

국제출원 내용을 구체적으로 언급하여 출원인이 조사보고서 결과를 이해하고 해석할 수 있게 해주며, 특허 취득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특별히 도움이 됩니다. 견해서는 해당 출원과 동시에 대중이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출원인이 국제예비심사(질문 23) 참조)를 청구하지 않는 경우, 견해서는 국제단계의 종료 시 국내(또는 지역) 특허청에 영어 번역문과 함께 제공되는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1장)의 기초가 됩니다. 특허의 부여에 대한 결정은 출원인이 국내단계에 진입하는 각 국내관청 또는 지역관청의 책임으로,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1장)는 그 관청들이 고려하기는 하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보충적 국제조사

19) PCT 보충적 국제조사란 무엇입니까?

보충적 국제조사는 출원인으로 하여금 국제조사(“주 국제조사”) 이외에도 하나 이상의 보충적 국제조사가 각기 주 국제조사를 수행하지 않은 국제조사기관에 의해 수행될 것을 청구할 수 있게 해줍니다. 상기 추가조사는 국내단계에서 새로운 특허문헌 및 기타 기술문헌이 발견될 위험을 낮춰주는데, 이는 보충적 조사를 청구함으로써 출원인이 조사되는 문헌들의 언어 및/또는 기술적 범위를 확대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20)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란 무엇입니까?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는 통상 내용 및 외양에 있어 주 국제조사보고서와 유사하며, 국제출원에 청구된 발명의 특허성에 영향을 줄 수 있는 특허문헌 및 기타 기술문헌에 대한 인용목록을 포함합니다. 그러나 보충적 국제조사 시 발견한 다른 문헌들과 함께 읽었을 때 나타나는 새로운 관련성으로 인해 필요한 경우를 제외하고, 국제조사보고서에 인용된 문헌들은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에 재인용되지 않습니다. 간혹,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가 주 국제조사보고서보다 더 자세한 설명을 포함할 수 있습니다. 이는 주 국제조사와는 달리, 보충적 국제조사보고서가 견해서와 함께 작성되지 않기 때문이며, 이러한 추가정보는 인용목록을 충분히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국제공개

21) PCT 국제공개는 어떻게 구성되어 있습니까?

WIPO는 우선일로부터 18개월 만료 직후(그 전에 국제출원이 취하되지 않은 경우) 국제조사보고서와 함께 상기 출원을 공개합니다. PCT 국제출원은 PATENTSCOPE (www.wipo.int/patentscope/search/ko/structuredSearch.jsf)에 온라인상으로 공개되는데, 상기 PATENTSCOPE는 완전한 검색기능을 갖춘 강력한 데이터베이스로서, 융통성 있는 다언어 인터페이스 및 번역 도구를 갖추어 사용자 및 일반인이 공개된 출원 내용을 이해하는 데 도움을 줍니다.

22) 제삼자가 국제출원 파일에 포함된 서류들에 접근할 수 있나요? 그렇다면 언제 가능한가요?

출원인이 요청 또는 승인하는 경우를 제외하고, 제삼자는 국제공개(우선일로부터 18개월 후) 때까지 국제출원에의 접근이 허용되지 않습니다. 출원의 취하를 희망하는 경우 (그리고 국제공개 전에 출원을 취하한 경우) 국제공개는 이루어지지 않으며, 따라서 제삼자의 접근이 불가능합니다. 그러나 국제공개가 이루어지는 경우, 공개된 국제출원과 함께 국제출원 파일 내

특정 서류들(예를 들어,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 및 견해서에 대한 비공식 의견서)은 PATENTSCOPE에서 이용할 수 있게 됩니다.

국제예비심사

23) 국제예비심사란 무엇입니까?

국제예비심사는 발명의 잠재적 특허성에 관한 두번째 평가로,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기초가 된 동일한 기준을 적용합니다(질문 18) 참조). 국제조사보고서에 확인된 문헌 및 국제조사기관의 견해서의 결론에 대한 대처로 출원인이 국제출원의 보정을 희망하는 경우, 국제예비심사는 능동적으로 심사과정에 참여하고 국내단계 진입 전 심사관의 판단에 잠재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제공해 줍니다. 국제예비심사 절차에서 출원인은 보정서 및 의견서를 제출할 수 있으며, 심사관과 면담할 수 있는 자격이 주어집니다. 상기 절차의 마지막에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IPRP 제2장)가 발행됩니다.

국제예비심사를 수행하는 국제예비심사기관들(IPEAs)은 상기 언급된 국제조사기관들을 의미합니다(질문 13) 참조). 하나의 PCT 출원에 대해 하나 이상의 관할 국제예비심사기관이 있을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상세정보는 수리관청이 제공하거나, 출원인이 *PCT 출원인 가이드* 및 *PCT 뉴스레터*를 참고할 수 있습니다.

24)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2장)는 어떤 가치가 있나요?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2장)는 출원인, WIPO 및 국내(또는 지역) 특허청에 제공되며, 조사가 이루어진 각 청구범위가 국제 특허성 기준에 합치되는지 여부에 관한 견해로 구성됩니다. 상기 보고서는 (대개 보정된 출원에 대한) 특허 취득 가능성을 평가하는 데 있어 훨씬 더 강력한 판단의 기초를 제공하며, 보고서가 유리한 경우 국내 및 지역 특허청에서 출원을 지속하는 데 있어 보다 강력한 판단의 기초를 제공합니다. 특허 허여 여부의 결정은 출원인이 국내단계에 진입할 때의 각 국내 또는 지역 관청의 책임으로,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제2장)는 상기 관청들이 고려는 하나 구속력이 있는 것은 아닙니다.

국내단계

25) 국내단계 진입은 어떻게 하나요?

국제출원을 더 진행시킬지와 어느 국가에서 진행할 지 여부를 결정한 후 출원인은 국내단계 진입을 위한 요건을 충족해야 합니다. 상기 요건들에는 국내수수료의 납부 및 특정한 경우로 출원의 번역문 제출 등이 있습니다. 대다수의 PCT 계약국 특허청들에 대해 이러한 절차는 우선일로부터 30개월이 만료하기 전에 밟아야 합니다. 또한, 국내단계 진입과 관련하여 다른 요건들(예를 들어, 현지 대리인의 선임)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국내단계 진입에 관한 일반정보는 *PCT 출원인 가이드*, *국내단계*에서 찾아볼 수 있으며, 수수료 및 국내요건에 관한 구체적인 정보는 동 *가이드*의 각 PCT 계약국을 위한 국내장(章)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26) 국내단계에서 제 출원은 어떻게 되나요?

일단 국내단계에 진입하게 되면, 당해 국내 또는 지역 특허청이 특허의 허여 여부 결정 절차를 시작하게 됩니다. 상기 관청이 수행하게 되는 모든 심사는 PCT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로 인해 더 쉬워지고, 국제예비심사보고서로 인해 보다 더 쉬워집니다.

추가 정보

27) 특허협력조약에서 WIPO의 역할은 어떻게 되나요?

WIPO는 특허협력조약을 관리하고, PCT 총회, PCT 실무그룹 및 국제기관회의(MIA)와 같은 회원국 조직의 사무국 역할도 합니다. 나아가, 제출된 각 PCT 출원에 대해 WIPO는 다음과 같은 책임이 있습니다.

- 모든 출원서류의 접수 및 보관
- 방식심사의 수행
- WIPO 온라인 데이터베이스인 PATENTSCOPE를 통한 국제출원의 공개
- 조약 및 규칙에 명시된 바에 따른 PCT 출원 자료의 공개
- 필요시 PCT 출원의 일부 및 특정 관련서류를 영어 및/또는 불어로 번역
- 관청 및 제삼자에 서류 송달
- 요청시 관청 및 사용자에게 법률 자문 제공

또한 WIPO는,

- PCT 제도를 전반적으로 조정하고,
- 기존의, 새로운, 그리고 잠재적 체약국 및 그 관청들에 원조를 제공하고,
- 국내 제정법에 특허협력조약을 반영하고 체약국 특허청의 내부절차를 수립하는 데 자문을 제공하며,
- PCT 출원인 가이드 및 PCT 뉴스레터를 발행하며,
- PCT 정보를 생성하여 PCT 웹사이트, 웹세미나, 유선 및 이메일 지원을 통해 이를 전파하고,
- PCT 세미나 및 훈련 과정을 조직하고 제공합니다.

28) 특허협력조약에는 어떤 이점이 있습니까?

PCT 제도는 출원인, 특허청 및 일반 대중에 있어 많은 이점이 있습니다.

- PCT를 이용하지 않았을 때와 비교하여, 출원인이 외국에서 발명의 보호를 추구하는 것이 바람직한지 생각해보고, 각국에서 현지 변리사를 선임하며, 필요한 번역문을 준비하고, 국내 수수료를 납부할 수 있는 시간이 최대 18개월 더 주어집니다.
- 출원인의 국제출원이 PCT에 명시된 형식과 동일한 경우, PCT 체약국 특허청은 출원을 처리하는 국내단계에서 방식요건상의 이유로 출원을 거절할 수 없습니다.
- 국제조사보고서와 견해서는 발명의 잠재적 특허성에 대한 중요 정보를 담고 있으며, 출원인이 사업 진행 방향에 대한 결정을 내리는 데 강력한 기초를 제공합니다.
- 출원인은 선택적 국제예비심사절차 중에 국제출원을 보정하고, 출원인의 입장을 충분히 표명할 수 있도록 심사관과 대화에 들어가며, 여러 국내특허청들이 처리를 시작하기 전 출원을 정돈할 수 있는 기회를 갖게 됩니다.
- 국제출원에 동반되는 국제조사보고서, 견해서 및 경우에 따라 특허성에 관한 국제예비보고서로 인해 국내단계에서 특허청들의 조사 및 심사 작업이 현저히 축소될 수 있습니다.
- PCT-특허심사하이웨이(PCT-PPH) 협약 또는 유사 협정을 맺은 체약국에서 국내단계의 심사절차를 가속화할 수 있습니다(www.wipo.int/pct/en/filing/pct_pph.html 참조).

- (g) 각 국제출원이 국제조사보고서와 함께 공개되기 때문에 제삼자가 청구된 발명의 잠재적 특허성을 더 잘 평가할 수 있습니다.
- (h) 출원인에게 있어 온라인상의 국제공개는 출원인의 발명을 세계에 공고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또한, 출원인은 실시계약 체결에 대한 관심을 PATENTSCOPE상에서 강조할 수 있으며, 이는 광고 및 잠재적인 실시권자를 찾는 데 있어 효과적인 수단이 될 수 있습니다.
- (i) 일반적으로 국제 처리절차에서 이루어진 업무는 각 관청에서 반복되지 않기 때문에(그 예로, 출원인은 여럿이 아닌 한 부의 우선권서류만 제출함) 출원인은 서류 준비, 송달 및 번역에 드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 (j) 국제단계 말에 발명이 특허를 받을 수 없는 것으로 판단될 경우 출원인은 PCT 출원을 포기할 수 있으며, 그에 따라 직접 외국에서 발명의 보호를 추구하고, 각국에서 현지 변리사를 선임하며, 필요한 번역문을 준비하고, 국내 수수료를 납부하는 데 발생하는 비용을 절감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특허협력조약은,

- 전세계에 출원을 가능하게 하고,
- 다양한 형식요건 충족 절차를 간소화하며,
- 다국적 특허보호와 관련된 주요 비용의 지출을 유예시키고,
- 특허 여부 결정에 강력한 기초를 제공하며,
- 다국적 특허보호를 추구하는 세계 주요 기업, 연구기관 및 대학이 이용합니다.⁴

29) PCT에 대한 더 자세한 정보는 어디서 찾아볼 수 있나요?

PCT 웹사이트(www.wipo.int/pct/ko/) 및 다음을 포함한 다양한 PCT 간행물에서 찾아볼 수 있습니다.

- PCT 출원인 가이드(www.wipo.int/pct/en/appguide/index.jsp)
- PCT 뉴스레터(월간지)(<http://www.wipo.int/pct/ko/newslett/index.html>)
- PCT 하이라이트(www.wipo.int/pct/en/highlights/)
- PCT에 대한 이해 비디오 시리즈(<https://www.wipo.int/pct/en/training/index.html>)
- PCT 원거리학습과정 (https://welc.wipo.int/acc/index.jsf?page=courseCatalog.xhtml&lang=en&cc=PCT_101E#plus_PCT_101E)(해당 페이지 오른쪽 상단에서 한국어 선택 가능)
- 세미나(https://www.wipo.int/pct/en/seminar/basic_1/index.html)
- PCT 웨비나(<https://www.wipo.int/pct/ko/seminar/webinars/index.html>)

PCT 국제특허출원을 고려하고 있는 출원인은 자국내 자격을 갖춘 변리사 또는 변호사 및 국내 또는 지역 특허청에서 자문을 받을 것을 권고합니다.

⁴ 화웨이기술유한공사, 미쓰비시전기주식회사, 삼성전자, 퀄컴, 광동오포이동통신유한공사, BOE 테크놀로지그룹, 주식회사 에릭슨, 평안과기(선전)유한공사, 로버트 보쉬, LG전자, 캘리포니아대학교, 칭화대학, 선전대학, 매사추세츠공과대학교, 화난이공대학, 텍사스대학교 시스템 이사회, 다롄이공대학, 하버드대학교, 서울대학교, 릴랜드 스탠퍼드 주니어 대학교 등

PCT 정보서비스(PCT 관련 일반 질문사항)

전화: (41 22) 338 83 38

이메일: pct.infoline@wipo.int

직접 WIPO에 국제출원을 희망하는 경우, 아래로 연락바랍니다.

World Intellectual Property Organization

PCT Receiving and Processing Section

34, chemin des Colombettes

CH-1211 Geneva 20, Switzerland

전화: (41 22) 338 92 22

이메일: ro.ib@wipo.int

웹사이트 주소: www.wipo.int/pct/en/filing/filing.html

ePCT: <https://pct.wipo.int>

WIPO IP 포털: <https://ipportal.wipo.int/>